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704
----------	-------

발의연월일 : 2025. 12. 30.

발 의 자 : 전현희 · 박해철 · 김영환
추미애 · 박상혁 · 김병주
한준호 · 김영배 · 이성운
정태호 · 부승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세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11월까지 적발된 시중유통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는 1,083건에 달함. 그런데 실제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약하고 재범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의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소비자 권리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3조의3 신설).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

제5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3조의3(벌칙) ① 제33조제4항 각 호(제3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제53조의2(벌칙) ----- ----- ----- -----.
1. · 1의2. (생 략)	1. · 1의2. (현행과 같음)
2. 제33조제4항 각 호(제3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	<삭 제>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3조의3(벌칙) ① 제33조제4항 각 호(제3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

<u>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u> <u>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배</u> <u>까지 가중한다.</u>
--